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별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 style="margin-left: 20px;">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u></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 style="margin-left: 20px;">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삭제)

<p>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12 조(수 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 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p>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현행과 같음)</p>
<p>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u>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 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⑥ <u>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u>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⑥(삭제)</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수익마련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별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u></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삭제)

<p>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12 조(수 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 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u>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u> 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p>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6.(생략) 7.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u>집합투자증권등</u>”이라 한다) 8.~11.(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6.(현행과 같음) 7.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u>집합투자증권등</u>”이라 한다) 8.~11.(현행과 같음)</p>
<p>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u>투자자는</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u></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⑥(삭제)</p>

<p>익증권의 환매)</p>		<p>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③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③ (생략)</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p>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별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u></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삭제)

<p>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12 조(수 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 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u>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u> 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p>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4. (생략) 5.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u>집합투자증권</u>(이하 “<u>집합투자증권등</u>”이라 한다) 6.~9.(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u>집합투자증권</u>(이하 “<u>집합투자증권등</u>”이라 한다) 6~9.(현행과 같음)</p>
<p>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u>투자자</u>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u>(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⑥(삭제)</p>

<p>익증권의 환매)</p>		<p>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p> <p>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u>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u>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u>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4.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u>고객의 성명 및 주소</u></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별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u></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삭제)

<p>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12 조(수 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 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p>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현행과 같음)</p>
<p>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u>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 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⑥ <u>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u>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⑥(삭제)</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별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u></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삭제)

<p>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12 조(수 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 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p>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현행과 같음)</p>
<p>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u>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 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⑥ <u>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u>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⑥(삭제)</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별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u></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삭제)

<p>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12 조(수 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 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p>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현행과 같음)</p>
<p>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u>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 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⑥ <u>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u>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⑥(삭제)</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③ (삭제)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u>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u>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4.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u>고객의 성명 및 주소</u></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u>가 <u>수익증권의 환매</u>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4.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u>고객의 성명 및 주소</u>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u>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u>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u>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증권 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u>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u>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u>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4.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 (이하 “ <u>실질수익자명부</u>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 는 <u>수익자</u> 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현행과 같음)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u>투자자</u> 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달러화(USD)로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③~④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u> 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달러화(USD)로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u> 가 <u>수익증권의 환매</u> 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⑤ (삭제) ⑥~⑦(현행과 같음) ⑧ (삭제)

환매)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7.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7.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u>고객의 성명 및 주소</u></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 (이하 “ <u>실질수익자명부</u>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 는 <u>수익자</u> 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가</u> <u>수익증권의 환매</u> 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⑤ (삭제) ⑥~⑦(현행과 같음) ⑧ (삭제)

환매)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p> <p>⑥ ~ ⑦(생략)</p> <p>⑧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u>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u> <u>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u> <u>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7.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7.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u>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u>가 <u>수익증권의 환매</u>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u>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S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 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9.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u>고객의 성명 및 주소</u></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 (이하 “ <u>실질수익자명부</u>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 는 <u>수익자</u> 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가</u> <u>수익증권의 환매를</u>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⑤ (삭제) ⑥~⑦(현행과 같음) ⑧ (삭제)

환매)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S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9.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u>고객의 성명 및 주소</u></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7.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7.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 청구권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 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변경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	---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가치형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별첨 1. 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④ (생략)	(생략)	(생략)	①~④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집합 투자증권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⑤집합 투자증권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⑪ (생략)	(생략)	(생략)	⑥~⑪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가치형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가치형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5.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5.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 (이하 “ <u>실질수익자명부</u>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 는 <u>수익자</u> 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u>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u> (삭제) ⑧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 3 조 제 4 항 각 호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2.(현행과 같음)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 (삭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⑥ (삭제)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3.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u>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u></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3 조 제 4 항 각 호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2.(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u></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 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 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별첨 1. 4. 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⑤ (생략)	(생략)	(생략)	①~⑤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⑥ 집합투자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⑦~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⑦~⑩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4.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3 조 제 4 항 각 호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2.(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별첨 1. 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④ (생략)	(생략)	(생략)	①~④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집합 투자증권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⑤집합 투자증권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⑪ (생략)	(생략)	(생략)	⑥~⑪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벨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3.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3.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u>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 (이하 “ <u>실질수익자명부</u>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 는 <u>수익자</u> 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 3 조 제 4 항 각 호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2.(현행과 같음)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u>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⑥ (삭제)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수익마련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별첨 1. 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⑤ (생략)	(생략)	(생략)	①~⑤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⑥집합 투자증권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집합 투자증권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⑦~⑫ (생략)	(생략)	(생략)	⑦~⑫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수억마련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수익마련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u>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3 조 제 4 항 각 호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2.(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u>가 <u>수익증권의 환매</u>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⑥ (삭제)</p>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2.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2.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3 조 제 4 항 각 호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2.(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u>가 <u>수익증권의 환매</u>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 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별첨 1. 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⑤ (생략)	(생략)	(생략)	①~⑤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⑥집합 투자증권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⑥집합 투자증권	4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3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⑦~⑫ (생략)	(생략)	(생략)	⑦~⑫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코리아셀렉트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회사 정관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회사 정관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 60 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회사 정관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1 조(주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11 조(주권의 발행 및 예탁)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법 제 30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주주의 성명 및 주소</p> <p>2. 예탁 주식의 종류 및 수</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 투자자 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그 기재 시에 법 제3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p> <p>④투자회사 투자자 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주주”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주권을 점유하며, 예탁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⑤이 조 제1항 각호의 주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을 추가하거나 주식의 종류를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조(주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한다.</u></p> <p>1. ~8. (현행과 같음)</p> <p>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u>1. 고객</u>의 성명 및 주소</p> <p><u>2. 주식</u>의 종류 및 수</p> <p>③ (삭제)</p> <p>④<u>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 12 조(예탁주권의 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예탁주권의 교부) ①실질주주는 당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회사에 주권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주권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100,000주권, 1,000,000주권, 10,000,000주권, 100,000,000주권, 1,000,000,000주권의 13종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주주는 주권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 주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 13 조(주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주권의 재교부) ①실질주주가 아닌 주주(“현물보유주주”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주주는 주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주주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p>(삭제)</p>
<p>제 14 조(주식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4조(주식의 양도)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투자회사 투자자 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주식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p>	<p>제 14 조(주식의 양도) ① <u>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 ② <u>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u> ③(현행과 같음)</p>
<p>제 16 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생략 ②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p>	<p>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생략 ②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p>

취득 제한 등)		<p>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 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 3 자에의 직접 매각 	<p>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 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 3 자에의 직접 매각
제 22 조(환매의 청구)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22 조(환매의 청구) ①~③ (생략) ④실질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⑤현물보유주주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을 교부받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삭제)</p>	<p>제22조(환매의 청구) ①~③ (현행과 같음) ④<삭제> ⑤<삭제></p>
제 23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주주의 경우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제 24 조(주식의 일부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24 조(주식의 일부환매) ①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경우 현물보유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제 22 조 내지 제 23 조, 제 25 조 내지 제 27 조에 따라 그 주식을 환매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한다. ③주주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 등의 사유로 보유 주식의 수가 1만주 미만인 경우, 주주는 그 1만주 미만의 잔여 주식에 대하여도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p>	<p>제 24 조(주식의 일부환매)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현행과 같음)</p>
제 28 조(주식의 소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28 조(주식의 소각) 제 22 조 내지 제 27 조 및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 또는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소각시기는 환매 또는 매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날의 24 시로 본다.(삭제)</p>	<p>제 28 조(주식의 소각) (삭제)</p>

<p>제 29 조(명의개서대리인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9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임한다. ②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 3 항 내지 제 5 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제29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삭제)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제 30 조(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30조(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①~② (생략)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주주</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주주</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주주</u>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u>실질주주</u>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u>실질주주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주주명부</u>에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주주</u>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⑥(생략)</p>	<p>제30조(주주명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주주</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주주</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주주</u>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u>주주</u>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주주명부</u>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현행과 같음)</p>
<p>제 51 조(투자대상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51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제51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u></p>

		<p>1. ~5. (생략)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7.~9. (생략)</p>	<p><u>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u>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7.~9.(현행과 같음)</p>
--	--	---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밸런스드 60 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④ (생략)	(생략)	(생략)	①~④ (생략)	(생략)	(생략)
		⑤ 집합투 자증권	5%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⑤ 집합투 자증권	5%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⑥~⑨ (생략)	(생략)	(생략)	⑥~⑨ (생략)	(생략)	(생략)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밸런스드 60 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별첨 1. 4. 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⑤ (생략)	(생략)	(생략)	①~⑤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⑥ 집합투자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⑦~⑪ (생략)	(생략)	(생략)	⑦~⑪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7.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7.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u>고객의 성명 및 주소</u>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u>가 <u>수익증권의 환매</u>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u>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7.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7.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u>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 (이하 “ <u>실질수익자명부</u>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 는 <u>수익자</u> 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u> 가 <u>수익증권의 환매</u> 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⑤ (삭제) ⑥~⑦(현행과 같음) ⑧ (삭제)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채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별첨 1. 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베어링 배당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⑤ (생략)	(생략)	(생략)	
		⑥ 집합투자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⑦~⑪ (생략)	(생략)	(생략)	
		나. (생략)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두자신탁(채권)]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③ (생략)	(생략)	(생략)			
④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⑤~⑨	(생략)	(생략)			
		[베어링 배당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⑤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⑥ 집합투자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⑦~⑪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두자신탁(채권)]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③ (생략)	(생략)	(생략)			
④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생략)			⑤~⑨ (생략)	(생략)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생략)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3.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3.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u>고객의 성명 및 주소</u></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 (이하 “ <u>실질수익자명부</u>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 는 <u>수익자</u> 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 3 조 제 4 항 각 호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2.(현행과 같음)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u>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⑤ (삭제) ⑥~⑦(현행과 같음) ⑧ (삭제)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별첨 1. 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베어링 배당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⑤ (생략)	(생략)	(생략)	
		⑥ 집합투자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⑦~⑪ (생략)	(생략)	(생략)	
		나. (생략)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두자신탁(채권)]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③ (생략)	(생략)	(생략)			
④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⑤~⑨	(생략)	(생략)			
		[베어링 배당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⑤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⑥ 집합투자증권	5%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⑦~⑪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두자신탁(채권)]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③ (생략)	(생략)	(생략)			
④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생략)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⑤~⑨ (생략)	(생략)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3.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3 조 제 4 항 각 호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2.(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u>가 <u>수익증권의 환매</u>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⑥ (삭제)</p>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4.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u>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 <u>실질수익자명부</u>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 는 <u>수익자</u> 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현행과 같음)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u>투자자</u> 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달러화(USD)로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③~④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u> 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달러화(USD)로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u> 가 <u>수익증권의 환매</u> 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⑤ (삭제) ⑥~⑦(현행과 같음) ⑧ (삭제)

환매)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별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u></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삭제)

<p>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12 조(수 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 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p>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현행과 같음)</p>
<p>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u>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 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⑥ <u>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u>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⑥(삭제)</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가치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p> <p>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u>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수익증권의</u> 종류 및 수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삭제)

<p>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12 조(수 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 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u>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u> 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p>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5.(생략) 6.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u>집합투자증권등</u>”이라 한다) 7.~10.(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5.(현행과 같음) 6.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u>집합투자증권등</u>”이라 한다) 7.~10.(현행과 같음)</p>
<p>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u></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⑥(삭제)</p>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삭제)</u></p> <p>⑥ <u>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채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③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③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 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삭제)</u></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 탁 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p>	(삭제)

반환 등)		<p>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삭제)
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제 14 조(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p>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 명부)</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u>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u></p> <p>⑧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p>제 17 조(투 자대상자산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u>투자대상</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생략) 7.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u>집합투자증권등</u>”이라 한다) 8.~11.(생략)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현행과 같음) 7.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u>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u>집합투자증권등</u>”이라 한다) 8.~11.(현행과 같음)
<p>제 24 조(수 익증권의 판매)</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투자자</u>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생략)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p>제 26 조(수 익증권의</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u>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u>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 ⑥(삭제)

환매)		<p>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p> <p>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u>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u>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 증권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채권 증권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4.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u>고객의 성명 및 주소</u></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가</u> <u>수익증권의 환매</u>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⑤ (삭제)</p> <p>⑥~⑦(현행과 같음)</p> <p>⑧ (삭제)</p>

환매)		<p>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17.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17.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u>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실질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 (이하 “ <u>실질수익자명부</u>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 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 는 <u>수익자</u> 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 ⑧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u>수익자</u> 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 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 ④ <u>실질수익자</u> 가 <u>수익증권의 환매</u> 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 ④~⑤ (삭제) ⑥~⑦(현행과 같음) ⑧ (삭제)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 ⑦(생략)</p> <p>⑧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하나로 증권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하나로 증권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p>③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제 11 조(예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p>	(삭제)

<p>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u>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u> ③ <u>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12 조(수 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u>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u> ② <u>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③ <u>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u></p>	<p>(삭제)</p>
<p>제 13 조(수 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u>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u> ②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u> 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u>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 ② <u>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u></p>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8.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별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8. (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은</u>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u></p>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⑥ (삭제)</p>

		<p>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p> <p>⑥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하나로 증권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자 대상</th> <th>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th> <th>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th> </tr> </thead> <tbody> <tr> <td>①~④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⑤집합 투자증 권</td> <td>5% 이하</td> <td>-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td> </tr> <tr> <td>⑥~⑩ (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④ (생략)	(생략)	(생략)	⑤집합 투자증 권	5%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⑩ (생략)	(생략)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자 대상</th> <th>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th> <th>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th> </tr> </thead> <tbody> <tr> <td>①~④ (생략)</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⑤집합 투자증 권</td> <td>5% 이하</td> <td>-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u>금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td> </tr> <tr> <td>⑥~⑩ (생략)</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④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집합 투자증 권	5%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u>금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⑩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④ (생략)	(생략)	(생략)																							
⑤집합 투자증 권	5%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⑩ (생략)	(생략)	(생략)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④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집합 투자증 권	5%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u>금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⑩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①~④ (생략)	(생략)	(생략)																									
⑤집합 투자증 권	5%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⑥~⑩ (생략)	(생략)	(생략)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삭제)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별첨 1. 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투자 대상	투자비율(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③ (생략)	(생략)	(생략)	①~③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집합 투자증권	5%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④집합 투자증권	5%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u>금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등” 이라 한다)
⑤~⑨ (생략)	(생략)	(생략)	⑤~⑨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 (채권)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효력발생일	신규효력발생일 적용	-	2019.09.16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국공채 증권투자신탁(채권)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u></p> <p>1. ~ 8. (생략)</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 (삭제)</p> <p>④ <u>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u>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④ (정정전) ⑤ 항수변경)</p>

<p>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p>	<p>(삭제)</p>
<p>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 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p>	<p>(삭제)</p>
<p>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체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p>

		③ (생략)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 (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실질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실질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이하 “<u>실질수익자명부</u>”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실질수익자명부</u>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명부</u>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u>실질수익자</u>는 <u>수익자</u>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삭제)</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후 ⑧ 항수변경)</p>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3 조 제 4 항 각 호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2.(현행과 같음)</p>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고객</u>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 26 조(수익증권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u>가 <u>수익증권의 환매</u>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삭제)</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⑥ (삭제)</p>

환매)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u></p> <p>⑥ <u>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삭제)</u></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u>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④ (생략)</p>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p> <p>④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제)</u></p>	<p>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각</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p>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 펀드클래스 상세 표기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문서전체	펀드클래스 상세표기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Class A Class Ae Class A-G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e Class C-F Class C-G Class C-W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Class S Class S-P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제 5 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가. 투자자총회 등 1)~3) (생략) 4) 반대매수청구권	가. 투자자총회 등 1)~3) (현행과 같음) 4) 반대매수청구권

	① ~② (생략) ③ <u>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u> (삭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	-------------------------

※ 기업공시서식 변경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외의 정정사항은 없음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전체		<u>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u> 에 따른 내용 변경	